

# 시·도지부 운영규정

제 정 2019. 10. 15.  
개 정 2020. 09. 24.  
개 정 2022. 01. 18.

## 제 1 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목적)** ①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당구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의 정관 제6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가맹단체운영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시·도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도지부는 당해 종목 또는 해당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명칭을 정하되, 시·도지부는 ○○장애인당구협회라 칭하고, 영문명칭도 정해야 한다. 또한 유형별 체육단체도 이를 준용하여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과 영문 명칭을 정해야 한다.

**제2조 (지위 및 명칭)** ① 각 시·도지부는 협회의 시·도지부로서, 해당 시·도 단위와 협회의 명칭을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정한다.

② 각 시·도지부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 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해당 시·도 내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설치목적)** 시·도지부는 장애인당구종목을 해당 지역으로 널리 보급하여 장애인의 체력을 향상케 하며,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시·도지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 지역 장애인당구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시·군·구 장애인당구 단체의 관리·지원
3. 장애인당구 생활체육 교실운영·대회 개최·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전개
4. 시·도간 체육단체와의 교류
5. 지역 장애인당구대회 개최 및 협회가 주최·주관·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주최·주관·후원·지원 등
6.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훈련 및 참가

7. 해당 시·도 소속의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
  8. 장애인당구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9. 장애인당구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행
  10. 지역의 장애인당구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자문
  11. 삭제
  12. 유형별 장애인분과위원회 운영
  13.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
- ② 시·도지부는 시·군·구 지부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사업은 중앙협회가 도·광역단위는 시·도지부가 주최하여야 한다.

## 제 2 장 조 직

**제5조 (조직)** 시·도지부는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로서, 시·군·구지부 또는 기타 체육단체로 구성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시·도지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의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협회의 주최·주관 및 승인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도지부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과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은 협회의 등록규정에 의거 매년 등록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의결기구 의결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장애인당구대회(전국규모대회, 시도별대회, 장애인당구대회, 자체대회 등 모든 대회를 포함한다.)는 대한장애인당구협회에서 발급한 심판 자격증 소지자만 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7조 (시·군·구지부 승인 및 취소)** ① 시·도지부는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체육단체가 소정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지부 승인을 요청할 시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승인한다.

② 시·군·구지부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지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 시·도지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6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27인 이내
3. 감사 1인 이상

**제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부의 임원은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3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 임기 횟수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달리 적용한다.

1. 시·도지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규약(정관)에서 정한 기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2. 해당년도 정기총회 개최 기일까지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시·도지부 회장 당선자의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⑧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 또한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과 같다.

⑨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⑩ 제1항의 임원의 임기 제한에 있어 보선된 임원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장의 선출)** ① 시·도지부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시·도지부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시·도지부에

서 지부로 승인한 시·군·구지부의 장과 시·도협회 선수위원장은 선거인에 포함된다.

**제11조(임원선임)** ① 회장을 제외한 시·도지부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임된 임원 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정한다.

②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아니한 시·도지부의 임원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가맹한 경우에는 반드시 협회의 승인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부는 승인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부의 임원에게 결격사유 및 기타 승인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제2항에 의한 임원 승인을 한 기관에 승인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부가 관리단체 지정 또는 사회적 물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제2항에 의한 기관의 임원 승인 권한을 제한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직접 그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가맹단체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시·도지부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시·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시·도지부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부는 해당자로부터 시·도지부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시·도지부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익이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시·도지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시·도지부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와 그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시·도지부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와 그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협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⑤ 시·도지부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위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⑥ 시·도지부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⑦ 시·도장애인체육회 또는 해당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시·도지부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시·도지부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 ⑧ 시·도지부의 임원이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장애인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시·도지부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시·도지부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통지서 발송일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다만,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아니한 시·도지부의 경우는 협회의 이사회 안건 통지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1조 제3항의 결과로써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12조에 해당하는 때
3. 시·도지부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16조 (시·도지부 임원에 대한 징계)**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부 임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부는 징계 처분을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장애인당구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해당 지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4장 총 회

**제17조 (대의원)** ① 시·도지부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시·도지부의 경우 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1. 시·도지부가 지부로 승인한 시·군·구 지부의 장
2. 시·도 선수위원장

②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시·도지부의 경우 가맹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시·군·구지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5일 전에 시·도지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④ 동일인이 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⑤ 시·도지부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다만, 제1항 제2호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다.

**제18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의원 또는 제3항에 의한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시·도지부의 해산 및 정관(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지부 설치 및 제명
3. 임원의 선임(회장 제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시·도지부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제13조 제4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2호 내지 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어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않은 시·도지부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②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이어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③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의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총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원격통신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22조 (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임원 전원이 해임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않은 시·도지부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대의원 또는 임원은 해당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참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총회구성 불가시 대체기관)** ① 시·도지부는 시·군·구 지부의 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않은 시·도지부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회에는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당연직 이사로 재적인원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행사한다.

## 제5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③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원격통신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27조 (이사회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제13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소집권자의 기피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은 제1항에 의한다. 다만,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않은 시·도지부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제28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

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29조 <삭 제>

### 제6장 각종위원회

**제30조 (각종 위원회)** ① 시·도지부의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협회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부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전문체육위원회
2. 등급분류위원회
3. 법제상벌위원회
4. 선수위원회
5. 지도자협의회
6. 심판위원회

③ 각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2개까지 겸임할 수 있으며,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전문체육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 회장과 친족관계인자(민법 제777조)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⑦ 등록선수 및 현직 지도자(비장애인 종목 지도자 제외)는 전문체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⑨ 제2항 제3호에 의한 법제상벌위원회 위원 구성 시 법률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 제7장 시·군·구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제31조 (지위 및 명칭)** ① 제5조에 의한 각 시·군·구 지부는 시·도지부의 시·군·구 지부이다.

② 시·도지부는 각 시·군·구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갖는다.

③ 시·군·구지부는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를 해당 시·군·구에 둔다.

제32조 (임원 승인) 시·군·구지부의 임원, 사업 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시·도지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조직 및 운영) 시·군·구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 (재원) 시·도지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공공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및 각종 지원금
2. 사업 수익금(후원금 등)
3. 삭제
4. 기부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35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시·도지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대의원 총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지원하는 교부금 및 각종 지정후원금(각종 국내·외 대회 등), 일반후원금(사무국 일반 후원금) 집행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를 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산보고서
2. 예산 집행관련 증빙서류 사본 일체. 단, 정산서는 총사업비 재원(기금, 지방비, 지정후원금, 자체예산 등)별로 구분하여 증빙되어야 한다.
3. 일반 후원금에 대하여도 별도 보고하고 증빙되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잔여예산 집행에 대하여도 시·도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금을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제재하고, 최대 3년간 시·도지부 운영비의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제36조 (기금 및 적립금)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3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협회와 동일하게 한다.

## 제9장 사 무 국

제38조(사무국) ① 시·도지부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관장하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장은 협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의 각급 가맹단체(산하지부 포함)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시·도지부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⑥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9조(직제·규정 및 경영공시) ①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시·도지부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 제10장 보 칙

제40조(규정 제·개정 및 해석) ① 시·도지부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시·도지부의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 외에 당해 시·도지부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시·도지부의 정관은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정관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않은 시·도지부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 규정은 시·도지부의 정관에 우선하며, 당해 단체정관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당해 단체정관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부의 규약(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당해 시·도지부 규약(정관) 이외 제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⑦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약(정관) 및 규정에 대해서는 시·도장애인체육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⑧ 시·도지부의 규약(정관) 및 제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 (제한사항)** 시·도지부가 협회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협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정관 제9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시·도지부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협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20.09.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2.0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4.00.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